규제영향분석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 기준

<목 차>

1.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성자	이름	김용석
	담당부서(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직급	공업연구관
	국장	양홍석		연락처	043-870-5457
	과장	김은하		이메일	yskim16@mail.go.kr

2026. 08. 3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양홍석 (서 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2조</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의 2제1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09.07~2026.09.28</td></tr>
<tr><td rowspan="5">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학용품 등*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 중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용품 등 교구 역시 「어린이제품안전법」의 적용범위에서 해당됨
* 색종이, 스케치북, 어린이 도서, 농구공, 곤충채집도구세트 등

○ 다만, 완제품이 아닌 형태로 칠판·게시판 등이 교실에 설치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곤란하여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피규제집단)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칠판 및 게시판 제조 · 납품업자
○ (이해관계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원아 및 학생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칠판 및 게시판 제조 · 납품업자</td><td>○ 55개 업체</td></tr><tr><td>이해관계자</td><td>○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적 중인 어린이</td><td>○ 2,827,051명
(`25. 총 유치원 원아수: 481,563명, 총 초등학교 학생수: 2,345,488명)</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td></tr>
<tr><td rowspan="4">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4">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22.13</td><td></td><td>22.13</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able>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2.13		2.67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칠판 및 게시판 부속서 1**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정의)제13호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정의)제10호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제11호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제12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제13호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제15의2호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2. 용어의 정의** **2.1 어린이제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2.2 칠판** 검정이나 초록색 등의 시트지 혹은 코팅을 하여 그 위에 마킹펜 혹은 분필로 글씨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만든 판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

2.2.1 칠판 종류

2.2.1.1 법랑칠판 금속(강철 등) 표면에 세라믹(도자기) 코팅을 적용한 칠판

2.2.1.2 보통칠판 금속 혹은 목재위에 시트지를 부착한 칠판

2.3 게시판 교실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결과를 게시하는 데 사용되는 교구

2.4 유해화학물질 3항의 안전요건에 제시된 물질

3. 안전요건

3.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3.1.1 유해원소 함유량

<table>
<tr><th>항목</th><th>허용치</th></tr>
<tr><td>총 납(Pb)[1), 2)]</td><td>100 mg/kg 이하</td></tr>
<tr><td>총
카드뮴(Cd)[2)]</td><td>75 mg/kg 이하</td></tr>
</table>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항목	허용치	비고
DEHP	총 합 0.1% 이하	Di-(2-ethylhexyl) phthalate, CAS No. 117-81-7
DBP		Dibutyl phthalate, CAS No. 84-74-2
BBP		Benzyl butyl phthalate, CAS No. 85-68-7
DINP		Diisononyl phthalate,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DIDP		Diisodecyl phthalate,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DnOP		Di-n-octyl phthalate, CAS No. 117-84-0
DIBP		Diisobutyl phthalate, CAS No. 84-69-5

비고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4. 시험방법

4.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1.1 유해원소 함유량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

4.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록 C에 따른다.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6 - 0000호(2026. 00. 00.)

시험 시료의 준비 부록 A

어린이제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각기 다른 구성 요소 및 색상에서 얻어지는 납의 정도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현 행	개 정 안
	때문에 어린이제품의 각 아이템은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취급한다. 즉, 한 제품이 여러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를 서로 다른 성분을 분리하고 각 성분의 시료를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시료 채취에 있어 제품 구성 요소별 각기 다른 종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성질에 따라 간단한 수동 분리 또는 잘라내는 등의 분리 작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버클, 훅, 구슬, 펜던트 또는 다른 구성물을 차례로 분리하여 개별 검사하기 위하여 손으로 제거하거나 잘라냄 등의 분리 작업을 실시하고 시험시료[1)]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에 페인트나 유사 코팅으로 되어있다면 원래의 기질재료로부터 코팅 층을 분리한다. 이때, 가능한 기질재료가 최소한으로 함유되도록 염화 메틸렌과 같은 용매를 몇 방울 떨어뜨려 페인트 및 유사 코팅된 부분이 유화되어 쉽게 분리되도록 하며 이러한 용매를 사용 했을 경우, 분석전에 증발시킨다. 만약 시료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여러 개를 취하고 분리된 시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거나 미세하게 분쇄한다. 어린이제품 용해시험의 경우, 시험시료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용해시험 동안 표면이 완전하게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시험시료 분리 방법에 따라 다수의 시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시료를 잘랐을 경우, 개별 부품의 코팅이 손상되어 잘못된 추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부품을 분리하는데 손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묶어서 같이 시험한다. 채취된 시료를 기질 종류에 따라 부록 B.1부터 B.4의 습식분석을 진행한다. **비고 1** 시험시료는 10 mg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내 10

현 행	개 정 안
	mg 미만의 시료는 제외한다. **유해원소 함유량** **B.1 금속 기질 재료 중의 납, 카드뮴** **B.1.1 원리** 어린이제품의 기질재료가 금속인 경우의 납, 카드뮴 정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료는 염산 또는 질산과 같은 산을 이용하여 분해시킨 다음, 이 용액을 AAS, ICP-OES, ICP-MS 등을 이용하여 납, 카드뮴을 정량한다. **비고** 이 방법에 따라 조작할 경우에는 유독하고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므로 아래에 나타낸 자세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B.1.2 시약** 시약 및 물 등에는 분석원소나 방해원소의 농도가 최저측정농도와 비교하여 무시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 **a) 물** KS M ISO 3696에 규정된 1등급수를 모든 시료용액의 준비와 희석에 사용한다. **b) 질산** 밀도(HNO_3) = 1.4 g/mL, 질량분율로서 65 %, "미량금속" 등급 **c) 묽은 질산 (1:2)** 물 [B.1.2 a)]과 진한 질산 [B.1.2 b)]을 2:1 (부피비) 비율로 묽힌다. **d) 플루오르화 붕소산** HBF_4, 질량분율로서 50 %, "미량금속" 등급, 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 [B.1.2 j)] 질량분율로서 40 % 200 mL에 붕산[B.1.2 m)] 75 g을 용해시켜 조제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e) 과산화 수소** 밀도(H_2O_2)=1.10 g/mL, 질량분율로서 30 %, "미량금속" 등급 **f) 과염소산** 밀도($HClO_4$) = 1.67 g/mL, 질량분율로서 70 %, "미량금속" 등급 **g) 인산** 밀도(H_3PO_4) = 1.69 g/mL, 질량분율로서 85 % 이상, "미량금속" 등급 **h) 황산** 밀도(H_2SO_4) = 1.84 g/mL,

현 행	개 정 안
	질량분율로서 95 %, "미량금속" 등급 **i) 묽은 황산 (1:2)** 물 [B.1.2 a)]과 진한 황산 [B.1.2 h)]을 2:1 (부피비) 비율로 희석한다. **j) 플루오르화 수소산** 밀도(HF) = 1.18 g/mL, 질량분율로서 40 %, "미량금속" 등급 **k) 염산** 밀도(HCl)=1.16 g/mL, 질량분율로서 37 %, "미량금속" 등급 **l) 브로민화 수소산** 밀도(HBr) = 1.48 g/mL, 질량분율로서 (47 ~ 49) %, "미량금속" 등급 **m) 붕산(H_3BO_3)** 50 mg/mL, 질량분율로서 5 %, "미량금속" 등급 **n) 혼합산 1** (염산 [B.1.2 k)] : 질산 [B.1.2 b)] : 물 [B.1.2 a)] = 2 : 1 : 2) **o) 혼합산 2** (질산 [B.1.2 b)] : 플루오르화 수소산 [B.1.2 j)] = 1 : 3) **p) 혼합산 3** (염산 [B.1.2 k)] : 질산 [B.1.2 b)] = 3 : 1) **q) 납 표준용액** (1 000 mg/L) **r) 카드뮴 표준용액** (1 000 mg/L) **s) 내부 표준 용액** 내부 표준물질은 분석원소와 방해가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한 시료용액 안의 내부 표준원소의 존재는 무시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 Sc, In, Tb, Lu, Re, Rh, Bi 및 Y 등이 내부 표준원소로 사용될 수 있다. **비고**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루오르화 수소산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고, 해독제 연고(수용성 젤에 2.5 % 글루콘산 칼슘이 함유된 것)를 발라 응급처치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1.3 장치 및 기구** **a) 원자 흡수 분광기(AAS)** **b)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기(ICP-OES)** **c)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MS)** **d) 마이크로파 분해 시스템** 시료용기와 고압 TFM(tetrafluoromethaxil)이나 PFA(perfluoro

현 행	개 정 안
	alkoxyfluorocarbon) 또는 다른 불화탄소물질로 이루어진 용기를 사용 **B.1.4 시료 조제** **B.1.4.1 시험 시료** 시료 1 g을 0.1 mg까지 달아 비커에 옮겨 넣는다. (플루오르화 수소산 [B.1.2 j)]을 이용할 때는 PTFE 또는 PFA 비커에 넣는다.[1)] **비고 1** 시료량이 (10 ~ 100) mg로 적을 경우 시료량 사용한 것으로부터 적절하게 검정곡선 작성 또는 측정하기 위해 시료용액를 계산하여 제조하여 시험한다. **B.1.4.2 시험용 시료 용액 조제** 이 절에서 설명하는 시료 전처리는 모든 금속과 그 화합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염산, 질산 또는 혼합산을 이용하여 용액을 조제한다. 이러한 산으로 용해가 어려운 시료는 과염소산, 황산 등을 필요시 넣어준다. 단, 황산 사용은 납 원소의 손실 위험성에 때문에 납의 정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료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잔류물 없이 완전히 용해시켜야 하며, 또한 인산을 사용해서 용해해도 된다. 금속이나 화합물을 강산으로 용해시킬 때는 침전의 위험이 있다. (황산에서는 Pb, Ba; 염산에서는 Ag, Au은 산화물 또는 수화산화물을 형성될 것이다). 만약 원소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침으로 인해 분석원소 물질이 감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 절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분석원소 물질이 시험용액에서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소 및 관련된 화합물 등(산화알루미늄, 산화실리콘, 탄화크로뮴 및 탄화 나이오븀 등) 다수는 이 방법으로 완전히 시료를 녹일 수 없다. 이러한 물질이 존재하면, 산 분해 후 잔류물은 알칼리 용융이나 밀폐 가압용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시료 원액과 합친다.

현 행	개 정 안
	a) 일반적인 시료 용해 방법 시료가 들어 있는 유리 비커에 시계접시를 덮는다. 혼합산 1 [B.1.2 n)] 20 mL를 넣고 용해될 때까지 가열한다. 실온까지 식힌 후 시계접시 안쪽과 비커 벽을 물로 씻어주고 시계접시를 제거한다. 용액을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최종용액은 시료용액을 모은 것이며 시료용액은 각 측정기기의 농도 수준에 적합하게 물로 희석한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로듐을 포함하는 내부표준물질 [B.1.2 s)]를 첨가한 후 물로 플라스크의 눈금까지 묽힌다. 원소의 종류와 양은 선택된 분석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각각의 희석과정은 결과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희석 및 내부표준물질 첨가는 시험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b) 주석을 함유하는 경우** 시료가 들어 있는 비커에 시계접시를 덮고 혼합산 3 [B.1.2 p)] 10 mL를 소량씩 넣어준다. 격렬한 반응이 끝나면 약하게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시킨다. 실온으로 식힌 후, 시계접시 안쪽과 비커 벽을 물로 씻어주고 시계접시를 제거한다. 황산 [B.1.2 h)] 10 mL를 넣고 황산 백연이 발생될 때까지 가열한다. 몇 분 동안 식힌 후 브로민화 수소산 [B.1.2 l)] 20 mL를 넣고 다시 가열하여 백연이 발생될 때까지 가열한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한 후, 실온으로 식힌 다음, 질산 [B.1.2 b)] 10 mL를 넣고 가용성 염류를 용해시킨다. 실온으로 식힌 후 용액을 100 mL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최종용액은 시료용액을 모두 모은 것이다. 시료용액은 각 측정기기의 농도 수준에 적합하도록 물로 희석한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로듐을 포함하는 내부표준물질 [B.1.2 s)]를 첨가한 후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선택된 원소의 종류와 양은 선택된 분석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의 희석과정은 결과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하며,

현 행	개 정 안
	희석 및 첨가된 내부표준물 [B.1.2 s)] 모두 시험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료 1 g에 물 40 mL, 질산 [B.1.2 b)] 12 mL와 플루오르화 붕소산 [B.1.2 d)], 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 [B.1.2 j)] 질량분율로서 40 % 200 mL에 붕산 [B.1.2. m)] 75 g을 용해시킨 것 6 mL를 사용하여 용해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PTFE 또는 PFA 비커와 LDPE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c) 시료 용해 시** 잔유물이 남아있을 경우 원심분리를 하거나 여과를 통해 분리한다. 잔류물에 납 원소가 없다는 것을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확인한다. **비고** 은이 존재하고 주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즉, 무연 땜납인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으로 용해시키고 분해가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과산화수소 10 mL을 소량씩 넣는다. **B.1.5 바탕 용액 조제** 시료를 제외하고 사용된 모든 시약을 사용하여 시료 용액 조제 방법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 용액을 조제한다. **B.1.6 시험 조작** 만약 시료조성이 확실히 알려져 있으면, 검정곡선법(매질 보정법)을 이용하고, 미지시료일 경우에는 내부 표준법 (감도 비교법)을 사용한다. 만약 표준물 첨가 방법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 **비고** **1.** 내부 표준법의 경우, AAS에는 적절하지 않음 **2.** 높은 매질 농도 시료에서는 매질 보정법이 유리하다. **3.** 만일 매질의 효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용매 추출, 이온교환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매질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B.1.6.1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 조제**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을 준비한다.

현 행	개 정 안
	a)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 납, 카드뮴 표준 용액을 (0 ~ 100) μg의 농도가 함유되도록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단계적으로 옮겨 넣어 묽힌다. 매질 보정법의 경우, 시료 용액의 매질과 표준용액의 매질이 근접되게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료 용액의 매질과 일치하는 혼합된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을 조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약 및 매질 원소를 넣는다. 만약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PTFE 비커 또는 PFA 비커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부피 플라스크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b) 내부 표준물 첨가법** 시료 용액의 농도와 같은 농도를 얻기 위하여, 시약과 내부 표준물 원소를 넣어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을 준비한다. 만약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PTFE 비커 또는 PFA 비커 및 LDPE 부피 플라스크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 **B.1.6.2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 **a) 원자 흡수 분광법(AAS)** 납, 카드뮴 원소의 원자 파장의 흡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조건하에서 AAS의 공기 - 아세틸렌 불꽃 안으로 조제된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의 일부를 도입시킨다.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에서는 납, 카드뮴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와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공존하는 물질로 인한 간섭의 경우, 선택된 검정 범위에서 간섭이 없는 파장을 선택하거나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섭 세기를 보정해야 한다. 0.998보다 큰 직선계수 (R^2)를 가진 직선회귀곡선은 초기검정에 사용될 수 있다. 점검 표준물결과 (즉, 표준물질, 표준용액 등)가 예상 값 보다 20 % 이상 차이가 나면,

현 행	개 정 안
	관계있는 검정 물질과 모든 시료는 다시 측정해야 한다. **b)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ICP-OES)** 납, 카드뮴 원소의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조건하에 ICP-OES 아르곤 플라즈마 안으로 준비된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의 일부를 도입시킨다.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에서는 납, 카드뮴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와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내부 표준법에서는 내부 표준 원소에 대한 납, 카드뮴 원소의 감도비율과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한다.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측정할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견디는 시료용기 및 토치를 사용한다. 제시된 파장은 납, 카드뮴 원소의 스펙트럼선으로부터 선택된다. 공존하는 물질로 인한 간섭의 경우, 검정 범위에서 간섭이 없는 파장을 선택하거나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섭 정도를 보정해야 한다. **c)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시료 용액은 시료 도입 용기를 통하여 아르곤 플라즈마 안으로 분무된다.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측정할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견딜 수 있는 시료 도입 용기를 사용한다. 납, 카드뮴 원소의 질량 대전하수를 읽고 내부 표준 원소를 측정한다. 내부 표준 원소의 측정값에 대한 측정원소 값의 비율을 계산된다. **B.1.7 시료 측정** 검정 곡선 작성 후, 검정 바탕 용액과 시료 용액을 측정한다. 만약 검정곡선보다 시료 용액의 농도가 높으면, 시료 용액이 검정 곡선 범위에 들어오도록 묽혀서 다시 측정한다. 측정 정밀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준물질, 검정 곡선용 용액 등으로 확인한다. (시료 10개마다) 필요하면, 검정 곡선을 다시 작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만일 시료용액이 검정 곡선 범위 안으로 묽혀지면 묽힌 시료 용액중의 내부 표준 농도도 표준 용액의 농도로 맞춘다. **B.1.8 계산** B.1.7에서 얻어진 시료 용액의 납, 카드뮴 스펙트럼선의 세기와 검정 곡선에서 납, 카드뮴의 양을 구하고, 다음 식에 따라 시료중의 납, 카드뮴의 함유량 (mg/kg)을 계산한다. $$c = \frac{A_1 - A_2}{m} \times V$$ 여기에서 c : 시료 중의 납, 카드뮴 농도 (mg/kg) A_1 : 시료용액 중의 측정된 납, 카드뮴 농도 (mg/L) A_2 : 바탕 시험용액 중의 측정된 납, 카드뮴 농도 (mg/mL) V : 시료 용액의 총 부피 (mL) m : 시료량 (g) **B.2 고분자 기질 재료 중의 납, 카드뮴** **B.2.1 원리** 어린이제품의 납, 카드뮴 함유량이 10 mg/kg 이상인 고분자 기질재료의 납, 카드뮴정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원자 흡수 분광법(AAS),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ICP-OES),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중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정량한다. 시료 분해방법은 건식 회화법, 황산이나 질산을 이용하여 산분해법,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를 이용한 산분해법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분해조작에 황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의 손실 위험성이 크므로 분석물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 사용을 권장한다. 만약 시료용액 중에 불용분이 존재하면 침전물을 X-선형광법 등으로 별도

현 행	개 정 안
	확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용해하여 원액과 합쳐 납을 정량한다. **비고** 이 방법에 따라 조작할 경우에는 유독하고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므로 아래에 나타낸 자세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B.2.2 시약** 시약 및 물에 있는 분석원소나 방해원소의 농도는 최저측정 농도와 비교하여 무시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 **a) 물** KS M ISO 3696에 규정된 1등급수를 모든 시료용액의 전처리와 희석에 사용한다. **b) 황산** 밀도(H_2SO_4) = 1.84 g/mL, 질량분율로서 95 %, "미량금속" 등급 **c) 질산** 밀도(HNO_3) = 1.40 g/mL, 질량분율로서 65 %, "미량금속" 등급 **d) 질산** 질량분율로서 10 %, "미량금속" 등급 **e) 과산화수소** 밀도(H_2O_2) = 1.10 g/mL, 질량분율로서 30 %, "미량금속" 등급 **f) 염산** 밀도(HCl) = 1.19 g/mL, 질량분율로서 37 %, "미량금속" 등급 **g) 플루오르화 수소산** 밀도(HF) = 1.18 g/mL, 질량분율로서 40 %, "미량금속" 등급 **h) 붕산(H_3BO_3)** 질량분율로서 5 % (50 mg/mL), "미량금속" 등급 **i) 납 표준 용액** (1 000 mg/L) **j) 카드뮴 표준용액** (1 000 mg/L) **k) 내부 표준용액** 분석대상원소와 방해되지 않는 내부 표준물질을 사용하고, 적은 양의 내부 표준원소를 사용한다. 내부표준 원소로는 Sc, In, Tb, Lu, Re, Rh, Bi, Y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ICP-OES의 경우에는 Sc, Y가 추천되고, 농도는 반드시 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B.2.3 장치 및 기구** B.1.3의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한다. **B.2.4 시료 조제** **B.2.4.1 시험 시료**

현 행	개 정 안
	시료 분해방법 선택에 따라 적당한 시료량의 범위는 가장 많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료채취에 있어 산분해법은 절단, 분쇄된 시료 400 mg을 0.1 mg까지 정확하게 달아 취하고, 건식 회화법 또는 밀폐된 용기에 의한 산분해법은 시료를 분쇄하거나, 깎거나, 잘라서 200 mg을 0.1 mg까지 정확히 달아 취한다. **B.2.4.2 시험 용액의 준비** **a) 건식 회화법** 할로젠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시료일 경우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시료를 달아 도가니에 넣어 가열판 위에 놓고 가열한다. 2) 환기가 잘 되는 후드 내에서 시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면서 도가니를 버너로 가열한다. 3) 시료가 숯 덩어리로 탄화되면서 발생된 휘발성 물질을 완전히 배출시키고 재만 남을 때까지 서서히 가열한다. 4) (550 ± 25) ℃로 조절된 전기로에 시료가 든 도가니를 넣고 전기로의 문을 살짝 열어두어 산화되도록 충분한 공기를 제공해준다. 5) 탄소가 완전히 산화되고 재만 남을 때까지 계속 가열한 후, 6)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꺼내어 실온으로 식힌다. 7) 질산 [B.2.2 c)] 5 mL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여 찌꺼기를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50 mL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시료용액은 측정기기의 적당한 농도가 되게 물로 희석한다. 내부 표준물질 [B.2.2 k)]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크를 눈금까지 묽히기 전에 ICP-OES경우 500 μL를 넣어주고, ICP-MS를 사용 할 경우는 1 : 1 000으로 묽혀 내부표준용액 [B.2.2 k)]을 넣는다. 할로젠 원소를 포함하는 시료일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가 진행된다.

현 행	개 정 안
	1) 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무게를 단다. 2) 황산 [B.2.2 b)] (5 ~ 15) mL를 넣고 가열판 또는 모래 중탕에 도가니를 올려놓고 시료가 검게 탄화될 때까지 서서히 가열한다. 3) 식힌 후, 질산 [B.2.2 c)] 5 mL를 넣고 시료가 완전히 분해되어 황산 백연이 발생될 때까지 계속 가열한다. 4) 가열한 도가니를 식힌 후, (550 ± 25) ℃로 조절된 전기로에 옮겨 넣고 탄소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가열하고 수분을 증발시키고 태운다. 5) 전기로에서 도가니를 꺼내 실온으로 식힌 후, 질산 [B.2.2 c)] 5 mL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여 찌끼를 용해시킨다. 이 용액을 50 mL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시료 용액은 측정기기의 적당한 농도가 되게 물로 희석한다. 내부표준물질 [B.2.2 k)]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크를 눈금까지 묽히기 전에 ICP-OES경우 500 μL를 넣어주고, ICP-MS를 사용 할 경우는 1 : 1 000으로 묽혀 내부표준용액 [B.2.2 k)]을 각각 넣는다. 6) 시료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잔류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원심분리를 하거나 걸러서 분리한다. 그리고 잔류물에 납의 함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b) 산분해법** 1) 일반적인 분해 방법 시료 약 (1 ~ 2) g을 0.1 mg까지 무게를 달아 코니컬 비커에 넣는다. 시료에 황산 약 10 mL를 가하고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가열판에서 서서히 가열하여 시료를 분해시킨 후, 조심스럽게 질산을 소량씩 추가하면서 가열하여 액의 색이 갈색을 나타낼 때 가열을 중단하고 식힌 뒤에 과염소산 2 mL와 질산 5 mL를 주의하면서 가하고 가열한다. 반응의 정도에 따라 가열의 세기를 조절하여 액의

현 행	개 정 안
	색이 무색이 될 때까지 질산 소량을 가하고,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하면 가열을 중지하고 냉각시킨다. 비커 안벽을 물로 세척하고 서서히 가열하여 황산을 증발 건고시킨다. 냉각시킨 후에 염산 10 mL를 가하고 시계접시를 덮은 후에 증발 건고시킨다. 다시 염산 10 mL를 가하고 가열시킨 후에 아이오딘화 수소산 2 mL를 첨가한 후 서서히 가열하여 용액이 10 mL가 되도록 농축한다. 냉각시키고 물 50 mL와 질산 (2 ~ 3) mL를 가하고 서서히 가열하여 과잉의 아이오딘화 수소산을 휘발시킨다. 이 투명 용액을 5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기고 물로 눈금까지 희석한 후 흔들어 섞고 시험 용액으로 한다. **비고** 과염소산을 넣고 가열할 경우에는 가열 온도가 200 ℃ 이상 되거나 또는 다량의 유기물이 분해되기 전에 증발 건고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실리카를 함유한 고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시료 약 1 g을 달아 테프론 비커에 넣고 황산 약 5 mL를 가해서 가열하여 분해시키고 황산의 흰 연기가 약간 나올 정도의 온도로 서서히 가열, 탄화시킨다. 질산 5 mL, 플루오르화 수소산 3 mL를 조심스럽게 가하기 시작하여 시료의 1차 분해를 마무리하고 증발 건고시키다. 이 조작을 2 ~ 3회 반복해서 행한 뒤, 질산 5 mL, 과염소산 3 mL를 주의하면서 가하고 반응 정도에 따라 가열 온도를 조절하여 가열 용해시킨 후 질산을 소량씩 가하여 액이 거의 무색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 용액을 증발 건고시키고 염산 10 mL를 가한 다음 시계접시를 덮은 후에 증발 건고시킨다. 다시 염산 10 mL를 가하고 가열시킨 후에 물 50 mL와 질산 (2 ~ 3) mL를 가하고 서서히 가열하여 과잉의 아이오딘화 수소산을 휘발시킨 후, 이 투명 용액을 5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기고 물로 눈금까지 희석한 후 흔들어 섞고 시험 용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c) 마이크로파 분해방법 1) 일반적인 분해 방법 시료를 달아 마이크로파 분해 용기에 옮겨 넣고, 질산 [B.2.2 c)] 5 mL와 과산화수소 [B.2.2 e)] (0.1 ~ 1.0) mL를 넣는다. 시료와 산류의 반응이 끝나고 안정되었을 때 용기를 마개로 막고,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 [B.1.3 d)]를 조립한 후, 미리 제시된 분해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크로파 오븐을 조작하여 시료를 용해시킨다. 용기를 식힌 후 용액을 5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눈금까지 물로 묽힌다. 시료 용액은 각 측정기기의 농도 수준에 적합하게 물로 희석한다. 내부표준물질 [B.2.2 k)]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크의 눈금까지 묽히기 전에 ICP-OES경우 500 μL를 넣어주고, ICP-MS를 사용 할 경우는 1:1 000으로 묽혀 내부표준물질 [B.2.2 k)]을 각각 넣는다. 2) 분해되지 않거나 시료에 실리카 또는 타이타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시료를 달아 마이크로파 분해 용기로 옮겨 넣고, 질산 [B.2.2 c)] 5 mL, 플루오르화 수소산 [B.2.2 g)] 1 mL 및 과산화수소 [B.2.2 e)] (0.1 ~ 1.0) mL를 넣는다. 용기를 마개로 막고,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 [B.1.3 d)]를 조립한 후, 미리 제시된 분해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크로파 오븐을 조작하여 시료를 용해시킨다. 용기를 식힌 후 용액을 50 mL 저밀도 폴리에틸렌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눈금까지 물로 묽힌다. 석영 플라즈마토치(만일 산에 견디는 시료도입장치가 없다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플루오르화 착물을 형성하도록 붕산 [B.2.2 h)]을 넣는다. 시료 용액은 각 측정기기의 농도 수준에 적합하게 물로 희석한다. 내부 표준물질 [B.2.2 k)]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크의 눈금까지 묽히기 전에 ICP-OES경우 500 μL를 넣어주고, ICP-MS를 사용 할 경우는 1:1 000으로 묽혀

현 행	개 정 안
	내부표준용액 [B.2.2 k)]을 각각 넣는다. **비고** 과산화수소는 시료의 반응물질을 알 때 첨가한다. 쉽게 산화되는 물질과는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므로 쉽게 산화되는 물질이 많이 존재할 경우,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시료 용액에 잔류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원심분리하거나 걸러서 분리한다. 그리고 잔류물에 납의 함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B.2.5 바탕 용액 준비** 시료를 제외하고 사용된 모든 시약을 사용하여 시료 용액 조제 방법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 용액을 조제한다. **B.2.6 시험 절차** 일반적으로 시료는 미지조성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이와 같은 경우 내부표준물법(감도비교법)을 추천한다. 필요하다면 표준물 첨가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간섭원소가 없거나 시료의 조성이 알려져 있으면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고** 모든 상황에서 산은 시료의 농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B.2.6.1 검정 곡선용 용액 조제** 납, 카드뮴 표준 용액을 (0 ~ 100) μg을 단계적으로 취해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넣는다. 내부 표준물 첨가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시료용액의 산농도와 내부 표준물 [B.2.2 k)] 검정 곡선 용액의 산 농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 준다. **B.2.6.2 검정 곡선 작성** 분광기는 정량을 위해 준비한다. 조제된 검정 곡선 용액의 일부를 각각 아르곤 플라즈마 또는 공기 - 아세틸렌 불꽃 안으로 분무한다. 플루오르화 수소산이 함유된 시료를 측정할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견디는 시료

현 행	개 정 안
	도입 장치를 사용한다. a) 원자 흡수 분광법(AAS) 납, 카드뮴 원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한다.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에서는 납 원소의 흡광도와 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검정곡선으로 작성한다. 표준물 첨가법에서 표준물을 시료용액에 넣어주고, 미지농도는 영의 흡광도로 첨가 곡선을 외삽하여 결정한다. 0.998보다 큰 직선계수 (R^2)를 가진 직선 회귀곡선은 초기검정에 사용될 수 있다. 검정 표준물질 측정 결과(즉, 표준물질, 표준용액 등)가 예상치보다 20 % 이상 차이가 나면 관계있는 검정 표준물질과 모든 시료는 다시 측정한다. b)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ICP-OES) 납, 카드뮴 원소의 방출세기를 측정하여 정량한다. 검정 곡선법으로 납, 카드뮴 원소를 정량할 경우 납, 카드뮴 원소의 방출세기와 납, 카드뮴 농도의 관계를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내부 표준물 첨가법에서는 내부 표준 원소의 곡선에 대한 납, 카드뮴 원소의 세기비와 농도의 관계를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c)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납, 카드뮴 원소의 질량대전하수의 비율을 측정하여 정량한다. 검정 곡선법에서는 납, 카드뮴 원소의 질량/전하수의 비율의 세기와 납, 카드뮴 농도의 관계를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내부 표준물 첨가법에서는 내부 표준 원소의 곡선에 대한 납, 카드뮴 원소의 세기비와 농도의 관계를 검정곡선으로 작성한다. **B.2.7 시료 측정** 검정 곡선을 작성한 후, 바탕 용액과 시료 용액을 측정한다. 만약 시료의 농도가 검정 곡선보다 높으면 시료 용액을 검정 곡선범위 내로 묽혀 다시 측정한다. 측정 정밀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준물질, 검정 곡선 용액

현 행	개 정 안
	등으로 확인한다. (10개 시료마다 1회) 만약 필요할 경우 검정 곡선을 다시 작성한다. **비고** 만약 시료 용액이 검정 곡선 범위로 희석되면 희석된 시료 용액 안의 내부 표준 농도는 표준 용액으로 맞춘다. **B.2.8 계산** 다음 식에 따라 시료중의 납, 카드뮴 함유량 (mg/kg)을 계산한다. $$c = \frac{A_1 - A_2}{m} \times V$$ 여기에서 c : 시료 중의 납, 카드뮴 농도 (mg/kg) A_1 : 시료 용액 중의 납, 카드뮴 농도 (mg/L) A_2 : 바탕 시험 용액 중의 납, 카드뮴 농도 (mg/L) V : 시료 용액의 총 부피 (mL) m : 시료량 (g) **B.3 페인트나 유사 코팅 중의 납, 카드뮴** **B.3.1 원리** 이 방법은 페인트 및 유사 코팅된 표면을 부록 A에 따라 분리하여 총 납, 카드뮴을 정량한다. **B.3.2 장치 및 기구** a) **일회용 플라스틱 분해용기, 또는 유리제 시험관** 50 mL b) **가열판** 시험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B.3.3 시약** a) 탈이온수 b) 질산 c) 염화 메틸렌

현 행	개 정 안
	B.3.4 조 작 a) 부록 A에서 준비된 시료(페인트 및 유사코팅 부분) 약 (30 ~ 50) mg을 달아 50 mL 비커에 옮겨 넣는다. b) 페인트 표준물질(NIST SRM 2581-분말 페인트, 납 0.5 %, 카드뮴 0.5 % 등)을 준비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한다. c) AOAC 974.02 또는 ASTM E 1645에 따라 적절히 시료를 용해한다. d) 시료 용액 중 납의 농도가 기기의 검정 곡선 범위에 오도록 시료를 묽힌다. e) CPSC-CH-E1003-09.1에 따라 시료 용액 중의 납을 정량한다. 이때, ICP 분석은 CPSC 공표문과 납, 카드뮴 정량을 위한 운영절차 지침, 그리고 금속 어린이제품 내 납, 카드뮴 농도의 유효성지침 CPSC-CH-E-1001-08내에서 유효해야 한다. **B.4 기타 재료 중의 납, 카드뮴** **B.4.1 원리** 고분자 및 금속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중 납, 카드뮴 정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원자 흡수 분광법 (AAS),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 (ICP-OES),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ICP-MS) 중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정량한다. 시험시료를 왕수로 분해하거나, 또는 질산, 플루오린화 붕소산, 과산화수소 및 염산 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분해를 이용한다. 납, 카드뮴 함유량이 10 mg/kg 이상 함유된 시료는 AAS 또는 ICP-OES를 이용하고, 0.1 mg/kg 이상 함유된 시료는 ICP-MS를 이용한다. **비고** 만일 HBF_4의 순도가 낮다면, 대신 HF를 사용한다. **B.4.2 시약** 시약 및 물에 함유되어 있는 납, 카드뮴 원소나 방해원소의 농도는 최저 측정농도와

현 행	개 정 안
	비교하여 무시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 또한, ICP-MS 분석용 시약들은 순도가 높고 미량금속의 총량이 질량분율로서 1 × 10^{-6} % 이하인 산이나 화합물이 함유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a) 물** KS M ISO 3696에 규정된 1등급수를 사용한다. 미량 금속 등급-총량 10 μg/kg 미만 **b) 염산** 밀도(HCl) = 1.16 g/mL, 질량분율로서 37 %, "미량금속" 등급 **c) 묽은 염산 (1:2)** 물 [B.4.2 a)]에 진한 염산 [B.4.2 b)]을 2:1의 비율로 묽힌 것. "미량금속" 등급 **d) 질량분율로서 5 % 염산 용액** "미량금속" 등급 **e) 질량분율로서 10 % 염산 용액** "미량금속" 등급 **f) 질산** 밀도(HNO_3) = 1.40 g/mL, 질량분율로서 65 %, "미량금속" 등급 **g) 0.5 mol/L 질산 용액** "미량금속" 등급 **h) 질량분율로서 10 % 질산 용액** "미량금속" 등급 **i) 혼산** HCl [B.4.2 b)] : HNO_3 [B.4.2 f)] =3 : 1 **j) 질량분율로서 50 % 플루오르화 붕소산 (HBF_4)** "미량금속" 등급 **k) 과산화수소** 밀도(H_2O_2) = 1.10 g/mL, 질량분율로서 30 %, "미량금속" 등급 **l) 납 표준 용액** (1 000 mg/L) **m) 카드뮴 표준 용액** (1 000 mg/L) **n) 내부 표준 용액** 내부 표준물질는 분석원소 방해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시료용액 중의 내부 표준 원소의 존재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Sc, In, Tb, Lu, Re, Rh, Bi, Y 등은 이 특정한 분광법을 위해 내부표준원소로 사용될 수 있다. **비고 1.** 이 방법에 사용된 각 시약의 유독성을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화합물은 잠재적인 건강위험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현 행	개 정 안
	서, 이용 가능한 방법에 의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줄일 것을 권고한다. **2.** 강산을 사용하는 전처리 방법은 부식 및 화상을 일으킨다. 산을 다룰 때는 실험복, 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3.** 질산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료에 산을 넣을 때는 항상 배기장치(후드) 안에서 시험한다. **4.**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는 효과적인 배기장치(후드)에 의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5.**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루오르화 수소산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고, 해독제 연고(수용성 젤에 2.5 % 글루콘산 칼슘이 함유된 것)를 발라 응급처치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4.3 장치 및 기구** B.1.3의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한다. **B.4.4 시료 조제** 이 절에서 설명된 시험 용액의 전처리는 어린이제품 중 금속 및 고분자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제품 부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염산, 질산 또는 혼합산을 이용하며 이러한 산으로 용해가 어려운 시료는 과염소산, 황산 등을 필요시 넣어준다. 단, 황산 사용은 납 원소의 손실 위험성 때문에 납 정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료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잔류물 없이 완전히 용해시켜야 한다. 만약 잔류물이 존재한다면, 납, 카드뮴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다른 분석방법(예, XRF)들을 이용하여 납, 카드뮴 함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분해법(알칼리 용융 또는 밀폐가압 용기의 사용)으로 조작하여 잔류물을 완전히 용해시킨다. 이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용액은 시료 원액과 합쳐서 납, 카드뮴 분석을 진행한다. **B.4.5 시험 시료**

현 행	개 정 안
	a) 왕수를 이용한 용해 분쇄한 시료 (최대입자크기 : 250 μm) 약 2 g을 달아 반응용기에 넣고, 염산 [B.4.2 b)] 22.5 mL와 질산 [B.4.2 f)] 7.5 mL를 넣는다. 반응용기에 환류 냉각기와 0.5 mol/L 질산 [B.4.2 g)] 10 mL가 들어있는 흡수용기를 설치한다. 실온에서 12시간, 120 ℃에서 2시간 동안 용해한다. 실온으로 식힌 후, 흡수 용기의 내용물을 반응용기에 넣고, 만약 불용분이 존재하면 시료 용액을 0.45 μm 유리 섬유 거르개로 거른다. 5 % 염산 용액 [B.4.2 d)] 15 mL를 사용하여 불용분을 4회 씻어준다. 얻어진 용액을 100 mL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5 % 염산 용액 [B.4.2 d)]으로 눈금까지 묽힌다. 시료 용액은 각 측정기기의 검정 곡선 농도에 적합하도록 묽힌다. 내부 표준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플라스크 눈금까지 묽히기 전에 넣는다. 최종부피 100 mL로 채우기 전에, ICP-OES의 경우 1 000 μL, ICP-MS는 1:1 000으로 묽힌 내부 표준물을 넣어준다. 시료 잔류물이 남아 있을 경우 원심분리나 여과를 통해 분리하고, 잔류물은 납의 존재 여부를 적절한 측정방법(예, XRF)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 절에서 설명된 시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실험자가 적합성을 확신할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제시된 시험 조작에서 오는 오차는 검증되어야 하며 시험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시료가 들어 있는 유리 비커에 시계접시를 덮고, 혼산[B.4.2 i)]을 비커에 넣고 120 ℃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고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다. 시계접시의 아랫부분과 비커의 내벽을 물로 씻어주고 시계접시를 제거한다. 만약 불용분이 존재하면 시료 용액을 0.45 μm 유리 마이크로섬유 거르개를 이용하여 거른다. 질량분율로서 5 % 염산 용액 [B.4.2 d)]으로 불용분을 씻어준다. 얻어진 용액을 100 mL

현 행	개 정 안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넣고 물로 눈금까지 묽힌다. 최종용액은 다음 측정에 이용된다. b) 마이크로파 분해 분쇄한 시료 (최대입자크기 : 250 μm) 약 200 mg을 달아 PTFE, TFM, PFA, 또는 다른 불화탄소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로 옮겨 넣는다. 질산[B.4.2 f)] 4 mL, 플루오르화 붕소산 [B.4.2 j)] 2 mL, 과염소산 [B.4.2 k)] 1 mL 및 물 1 mL를 넣는다. 발생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분해용기를 조심스럽게 약 10초 동안 흔들어준 후, 반응이 정지되면 용기를 마개로 막고,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 [B.1.3 d)]를 조립한 후, 미리 제시된 분해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크로파 오븐을 조작하여 시료를 용해시킨다. **비고** 만일 HBF_4의 순도가 낮다면, 대신 HF를 사용한다. 실온까지 식힌 후(약 1시간 방치) 분해용기를 열고 염산 용액 [B.4.2 b)] 4 mL를 넣고, 마개를 막은 후 다시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 [B.1.3 d)]를 조립한 후, 제시된 분해 프로그램에 따라 마이크로파 오븐을 조작하여 시료를 용해시킨다. 실온으로 식힌 후(약 1시간 방치) 분해용기를 열고 25 mL 부피 플라스크에 유리 마이크로섬유 거르개를 이용하여 거르고 5 % 염산 용액 [B.4.2 d)]으로 씻어준 후 눈금까지 묽힌다. 만약 잔류물이 존재하면 납, 카드뮴 존재여부를 적절한 측정방법으로 확인한다. 위에서 설명된 조작과정은 마이크로파 분해 장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각 시료에 대해서 2 ~ 3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용기에 분말 시료 200 mg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분말로 된 시험시료가 질산, HBF_4, 과산화수소, 염산 등과 혼합물이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생성한다. 이것은 봉합된 용기 안의 압력을 높이는

현 행	개 정 안
	원인이 된다. 갑자기 발생된 압력으로 인해 마이크로 오븐의 안전장치는 반응할 수 있고 용기가 열릴 수 있다. 분석원소물질이 손실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료에 시약을 가한 후 반응이 정지될 때까지 놓아둔 후 장치를 조립한다. **2** 한 개의 시료를 2~3번씩 분석할 때에는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산을 사용해야 한다. **B.4.6 시험 절차** 시료 측정을 위해 검정 곡선법을 사용한다. 내부 표준법(감도비교법)은 ICP-MS에 적용된다. **비고 1** 시험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물 첨가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2** 매질효과를 보정할 수 없다면 매질원소들을 용매 추출법, 이온 - 교환법 등과 같은 분리방법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B.4.7 검정 곡선용 용액 조제** 검정표준용액을 준비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a)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 검정 곡성용 바탕용액과 세 개의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을 준비한다. 납, 카드뮴 원소를 (0 ~ 100) μg 이 함유되도록 단계별로 채취하여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넣는다. 매질 보정법으로 표준용액을 조제할 경우에는 시료용액과 동일한 양의 시약과 매질원소들을 넣어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으로 조제한다. 플루오린화 붕소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부피 플라스크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한다. b) 내부 표준법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에 시료 용액 조제 시 사용된 같은 양의 시약을 넣어주고, 시료용액 및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 각각에 내부 표준 원소를 넣는다. 플루오르화 붕소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부피 플라스크

현 행	개 정 안
	또는 PFA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한다. c)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AAS, ICP-OES) 매질 보정법으로 납, 카드뮴을 측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스펙트럼선을 선택해야 하고, 검정도 매질이 보정된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으로 사용해야 한다. d)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이 방법은 적절한 내부 표준법으로 사용한다. **B.4.8 표준 용액 조제** 표준 용액의 준비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다르다. a)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 및 원자 흡수 분광법(ICP-OES, AAS) 왕수 분해로 얻어진 시료용액은 마이크로파 분해로 얻어진 용액과 다른 매질 조성을 가진다. ICP/OES를 위해 준비된 표준용액은 분석대상원소인 납, 카드뮴 직선성이 나오는 농도범위에서 AAS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검정 곡선용 바탕 용액과 네 개의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을 준비한다. **비고** 만일 HBF_4 순도가 낮다면, 대신 HF를 사용한다. b)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검정 곡선용 바탕 용액과 세 개의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을 준비한다. 납, 카드뮴 원소를 (0 ~ 5) μg이 함유되도록 단계적으로 채취하여 100 mL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넣는다.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에 시료용액 조제 시 사용된 같은 양의 시약을 넣어주고, 시료용액 및 검정 곡선용 표준 용액 각각에 내부 표준 원소로 로듐 1 μg을 넣는다. **B.4.9 검정 곡선 작성** 검정 곡선의 작성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다르다.

현 행	개 정 안
	a) 원자 흡수 분광법(AAS) 납, 카드뮴 원소의 원자 파장의 흡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조건하에 공기 - 아세틸렌 불꽃 안으로 준비된 검정 곡선용 표준용액의 일부를 도입시킨다. 검정 곡선법(매질보정법)은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와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납, 카드뮴 원소의 파장은 대표적인 측정파장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공존하는 물질로 인한 간섭의 경우, 선택된 검정범위에서 간섭이 없는 파장이거나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섭 세기를 보정해야 한다. b)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ICP-OES) 납, 카드뮴 원소의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조건하에 ICP-OES 아르곤 플라즈마 안으로 준비된 검정 곡선용 용액의 일부를 도입시킨다. 검정 곡선법(매질 보정법)은 원자 스펙트럼선의 세기와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작성하고, 내부 표준법은 내부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원소의 감도비율과 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검정 곡선으로 작성한다.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측정할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견디는 시료용기를 사용한다. 납, 카드뮴 원소의 파장은 스펙트럼선으로부터 선택된다. 납 원소의 파장은 대표적인 측정파장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검출한계 및 측정 정밀도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공존하는 물질로 인한 간섭의 경우, 선택된 검정범위에서 간섭이 없는 파장이거나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섭 정도를 보정해야 한다. c)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ICP-MS) 시험 용액을 아르곤 플라즈마 안으로 분무한다.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시료를 측정할 경우에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에

현 행	개 정 안
	견디는 시료용기를 사용한다. 납, 카드뮴 원소의 질량 대 전하수를 읽고 내부 표준물질를 측정한다. 납, 카드뮴 원소의 측정값과 내부표준물질의 측정값의 비율을 계산한다. **B.4.10 시료 측정** 검정 곡선 작성 후, 검정 바탕 용액과 시료용액을 측정한다. 만약 검정곡선보다 시료농도가 높으면, 용액을 검정곡선 범위에 들어오도록 묽혀 다시 측정한다. 측정 정밀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준물질, 검정 곡선용액 등으로 확인한다. (10개 시료마다 1회) 필요하면, 검정 곡선을 다시 작성한다. 0.998보다 큰 직선계수 (R^2)를 가진 직선회귀곡선은 초기검정에 사용될 수 있다. 점검 표준물결과 (즉, 표준물질, 표준용액 등)가 예상 값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관계있는 검정물질과 모든 시료는 다시 측정한다. **B.4.11 계산** B.4.9에서 작성된 검정 곡선에서 납, 카드뮴 원소의 분광세기를 구하고, 다음 식에 따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납, 카드뮴 원소의 농도 (mg/kg)를 계산한다. $c = \frac{A_1 - A_2}{m} \times V$ 여기에서 c : 시료 중의 납, 카드뮴 농도 (mg/kg) A_1 : 시료용액 중의 측정된 납, 카드뮴 농도 (mg/L) A_2 : 바탕 시험용액 중의 측정된 납, 카드뮴 농도 (mg/L) V : 시료 용액의 총 부피 (mL)

현 행	개 정 안
	m : 시료량 (g) **비고** 이 절에서 분석방법의 잠재적 다양함으로 인해 처음 시험용액의 희석이 적용되므로 위 식은 일반화된 것이다. 모든 희석과정은 계산 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프탈레이트계** **C.1 원리** 합성수지제에 한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 (GC-MS) 방법으로 측정한다. **C.1.1 정의** **a) 시료 (Sample)** 시험할 배치(Batch)의 개별 소비자 제품 또는 동일한 소비자 제품군을 말한다. **b) 구성 요소 부품 (Component part)** 제품 내 개별 하위 장치를 말한다. **c) 바탕 용액** 시료를 제외하고 사용된 모든 시약을 사용하여 시료 용액 조제 방법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 용액을 조제한다. **d) 표준저장용액 (Stock standard)** 검정표준용액에 준비에 사용되는 가장 높은 순도로 평판 있는 상업적 공급원에서 구입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말한다. 유통기한 전에 교체되어야 한다. **e) 검정표준용액 (Calibration standard)** 분석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포함한 용액. 각 검정표준용액은 1 mg/L의 내부표준용액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 4개의 검정표준용액이 사용되어야 한다. 검정표준용액은 표준저장용액에서 제조되어

현 행	개 정 안
	야 하며 상온에서 보관 될 수 있다. **C.1.2 시약 및 재료** **a) Tetrahydrofuran (THF),** GC 등급 이상 **b) Hexane,** GC 등급 이상 **c) Acetonitrile (ACN),** GC 등급 이상 **d)** PTFE 또는 실리콘 라이너로 밀봉 가능한 20 mL 이상의 유리 바이알 **e)** 전자 저울, 분해능 ±0.000 1 g **f)** 냉동 분쇄기 (또는 시료를 분말로 분쇄 가능한 장비) **g)** 초음파 추출기 **h)** PTFE 실린지 필터, 0.45 μm **i)**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GC-MS) **j)** 일반적인 실험실 기구 **k)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CAS No. 117-81-7 **l)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m)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n) Diisononyl phthalate (DINP),** CAS No. 28553-12-0 또는 68515-48-0 **비고** 제조회사가 다른 경우 DINP의 피크 패턴이 다를 수 있다. **o) Diisodecyl phthalate (DIDP),** CAS No. 26761-40-0 또는 68515-49-1 **p) Di-n-octyl phthalate (DnOP),** CAS No. 117-84-0 **q) Diisobutyl phthalate,** CAS No. 84-69-5 **r) Anthracene-d10** **비고** Anthracene-d10 내부 표준물로 적당하다. **C.1.3 주의 사항**

현 행	개 정 안
	이 규격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와 함께 후드에서 모든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흔한 오염물질이며 소량의 오염도 정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료를 피하고 세척된 유리제품 및 초자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용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있는지 시험해야 하며, 잠재적인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Solvent blank를 GC-MS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경우 일회용 유리 제품을 권장한다. **C.1.4 시료 준비** 분석 전, 합성수지제를 작은 조각(2 mm × 2 mm 이하의 치수)으로 자르거나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자르거나 분쇄된 각각의 합성수지제는 C.1.5의 시험 시료로 간주된다. 최소한 시험 시료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양을 준비한다. **C.1.5 시료 추출** 시험소는 결과 값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반복시험 시료 수를 결정해야 한다. 시료와 함께 바탕용액을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용매(ACN 또는 Hexane 중 선택)에 내부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1 mg/L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 **a)** (0.150 ± 0.005) g의 시료를 유리 바이알에 넣는다. 시료가 균질하지 않으면 더 많이 채취하여 시료 편차를 줄인다. **b)** THF 5 mL을 시료에 첨가한다. 무게가

현 행	개 정 안
	0.150 g 보다 큰 시료의 경우, 0.150 g 시료 (또는 시료를 녹이기 적당한 양) 무게 마다 5 mL의 THF를 첨가한다. 시료를 약 30분간 흔들거나, 저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용해 시킨다. * 시료는 초음파 추출을 통해 용해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비고** **1.** 일부 시료는 완전히 용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용해시간을 2시간 더 추가 한다. **2.** 최소 시료량은 0.01 g (10 mg) 이며, 0.3 mL THF와 0.7 mL ACN이나 Hexane을 사용한다. **c)** b)에서 사용된 THF 5 mL 마다 10 mL의 ACN 또는 Hexane을 넣어 PVC 고분자를 침전 시킨다. 혼합액을 강하게 흔들어 준 뒤 고분자 물질이 가라앉을 때까지 최소 5분간 방치한다. **e)** 분석을 위해 상층액을 GC바이알로 옮긴다. c)에서 Hexane이 사용된 경우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상층액을 분석 전에 여과 한다. **C.1.6 기기 분석** 시료 분석에는 Auto-sampler가 장착된 GC-MS 사용을 제안한다. 향상된 MS 옵션 (예: 이온트랩 또는 이중 질량 분석법)이 장착된 GC 또는 LC를 정성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GC 조건이 사용 될 수 있다. **비고** 검출기 칼럼 등의 조건은 기기 및 분석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C.1.6.1 GC-MS 분석조건**

현 행	개 정 안

GC 조건	
주입량:	1.0 μL
주입속도:	빠름
주입구 온도:	300 ℃
주입구 모드:	Splitless
라이너:	Split / splitless liner (ID: 4 ㎜, single tap, with glass wool)
컬럼	DB-5MS, (30 m × 0.25 ㎜ × 0.25 μm), capillary column
이동상 가스:	헬륨
이동상 가스 유속:	1.5 mL/min (constant flow)
오븐 온도:	초기 : 110 ℃ for 0.5 min 승온 1 : 20 ℃/min to 280 ℃ for 1 min 승온 2 : 20 ℃/min to 320 ℃ for 5 min
MSD 트랜스퍼 라인 온도:	320 ℃
MSD 조건	
용매지연:	4.5 min
EM 오프셋 (relative voltage):	400 V
MS Quad:	150 ℃ (최대: 200 ℃)
MS Source:	230 ℃ (최대: 250 ℃)
어케지션 모드:	SCAN / SIM 모드
스캔 범위:	50 amu ~ 500 amu
샘플링 레이트:	2
문턱 (threshold):	150

C.1.6.2 GC-MS 정량분석

물 질	머무름 시간 (min)	GC-MS		
		타겟 이온 (m/z)	참고 이온 (m/z)	
Anthracene-d10	~ 6.720	188	94	160
DIBP	~ 6.946	223	149	205
DBP	~ 7.416	223	149	205
BBP	~ 9.246	206	91	149
DEHP	~ 10.134	279	149	167
DnOP	~ 11.126	279	149	167
DINP	~ 11.082	293	149	307
DIDP	~ 11.986	307	149	293

현 행	개 정 안
	C.1.7 계산 시료 내 개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 $\frac{C \times V}{W} \times \frac{1}{10\,000} \times D.F$ 여기에서 C : GC-MS에서 얻은 개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농도값, mg/L V : 최종부피, mL W : 시료무게, g D.F. : 희석배율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된 칠판·게시판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산업부 국정감사(`24.,`2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환경단체(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초등학교 칠판 등 교구에서 납·카드뮴 등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보도자료 배포(`23.12)

○ 학용품 등 교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 중이나, 완제품이 아닌 형태로 칠판·게시판 등 교실에 설치되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칠판 및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ㅇ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내용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ㅇ 현행 유지
	내용	안전기준 미존재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칠판 및 게시판 함유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ㅇ 칠판 및 게시판 제조·납품업자의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 부담
규제대안2	ㅇ 칠판 및 게시판 제조·납품업자의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	ㅇ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위해 요소 유지

	인 부담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칠판 및 게시판 제작·납품업체	ㅇ (일시) 2026.6.25(목) ㅇ (장소) FITI시험연구원 ㅇ (방법) 대면회의	안전에 필수적 요건에 한해 기준 마련 요구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안전한 교실 환경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안1. 선택
- 현행을 유지하는 대안2. 선택시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해 요소가 유지되는 불이익이 지속됨

3. 규제목표

ㅇ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칠판 및 게시판의 재질에 따라 노출이 우려되는 유해물질에 한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 수준의 안전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칠판 및 게시판 재질에 따라 검출이 우려되는 최소한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모든 어린이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요건을 요구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칠판 및 게시판 제조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모든 칠판 및 게시판에 적용되어 차등화적용에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과 관련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 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와 관련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 유해물질 안전요건 및 관련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 없음
사후 평가관리		사후 평가관리 관련 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관련 국제표준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EN 14434(Writing board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 Ergonomics technical and safety requirements and their test methods)가 연관 표준으로 존재.
해당 표준은 칠판의 물리적 품질에 대하여 규정하며, 유해물질 관련 부분은 명확히 명시한 바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N 14434	불일치	유해물질 관련 안전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동 안전기준에서 명확히 함

o 타법사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요건과 동등 수준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ㅇ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2.13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ㅇ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2.13		22.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2.13		22.13
기업순비용	22.13	연간균등순비용	2.6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납품을 위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입증이 필수적으로 관련 업계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련 업체가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행정적 부담 발생 없이 운영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 발생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장철민 의원, `25.4.)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5.1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공포 `25.12., 시행 `26.12.)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 : `26.9~10월
- 규제 심사 : `26.10월중
- 법제처 심사 : `26.11월
- 시행 : `26.12월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시 제정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ㅇ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2.13		22.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2.13		22.13
기업순비용		22.13	연간균등순비용	2.6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ㅇ 칠판 및 게시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칠판 및 게시판 제조업자
활동제목	안전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항목	기타
비용	22,137,5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 55개사 X (21,875원 + 21,875원 + 157,500원) X 2개 부위(판서면, 테두리)(55*(21875+21875+157500)*2)
근거설명	ㅇ 규제비용 식별 –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 별표 3의2를 통해 칠판 및 게시판을 안전기준 특례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함 ㅇ 규제비용 산출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칠판 및 게시판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구매 중 – 칠판 및 게시판 관련 업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 등록시 또는 학교 납품시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종류 및 크기별이 아닌 재질별로 품질 등 제품에 요구되는 요건을 조달청 또는 학교가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확인 중 * 조달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 주체 및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피규제자 규모)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칠판 및 게시판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55개 업체로 파악됨 – (안전성 확인 필요 범위) 각 업체가 칠판 및 게시판에 사용되는 재질인 법랑, PVC를 사용한 판서 부분, 금속 및 합성수지를 사용한 칠판 및 게시판 테두리를 갖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각각 제조·납품하는 것으로 가정, 현재 안전요건에서 금속 재질에 대하여 납, 카드뮴 안전요건을 준수할 것

	을 명시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재질에 대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안전성 확인시 필요 비용) 모든 부위 및 재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6회의 시험이 필요함. 시험별 시험수수료의 경우, 주요 시험기관이 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주요 시험기관의 시험별 평균 시험수수료는 납 검출 21,875원,카드뮴 검출 21,875원,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157,500원으로 파악됨 *(납/카드뮴 검출) (KTR) 25,000, (KATRI) 25,000, (FITI) 20,000, (KOTITI) 17,500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KTR) 150,000, (KATRI) 185,000, (FITI) 170,000, (KOTITI) 125,000 = 55개사 X (21,875원 + 21,875원 + 157,500원) X 2개 부위(판서면, 테두리) = 22,137,500원 – (반복 발생 여부) 각 시험은 업체별 재질을 유지할 경우, 재시험의 필요가 없으므로, 쇼핑몰 등록시 해당 제품에 대한 1회의 시험으로 판매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적 중인 어린이
활동제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적 중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및 게시판 안전관리
편익항목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적 중인 어린이 안전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유해물질 함유 칠판 및 게시판으로 인한 위해 우려 차단 – 안전기준 특례 대상으로 칠판 및 게시판이 명시되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칠판 및 게시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 – 설치 이후에도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설치된 칠판 및 게시판이 안전기준 지속 준수 여부를 관리

	○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로 지정함에 따른 기대효과 –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어린이 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제적 중인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